

요약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신변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치매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음. 특히 신탁업 영위와 요양서비스 제공이 모두 가능한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음. 그러나 관련 규제로 인해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치매신탁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치매신탁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신탁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범위 확대,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체계적인 치매 인구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증가는 고령화만큼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머니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¹⁾

-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23년 911,760명이고, 2040년에는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²⁾
 -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25년 6.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9년에는 10.68%, 2070년에는 11.2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치매 환자의 자산은 2023년 기준 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예상 GDP의 15.6%인 488조 원으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어서,³⁾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표 1〉 추정 치매 환자 수 추이(60세 이상)

(단위: 명, %)

구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2059년	2070년
치매 환자 수	1,014,266	1,256,506	1,534,809	1,835,369	2,103,272	2,293,537	2,374,481	2,265,274
유병률	6.89	7.28	7.85	8.73	9.51	10.33	10.68	11.21
60세 이상 인구	14,669,373	17,205,164	19,483,632	20,948,058	22,040,385	22,177,085	22,225,229	20,199,417

주: 60세 이상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4년 5월 기준)에 근거함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2024), 2023년 치매역학조사

○ 치매 인구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치매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와 신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치매 인구 증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가족 돌봄 부담 증가와 가족 갈등 심화, 의료·요양 시스템 과부하,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과 인권 문제, 가족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1) 치매머니는 치매 환자의 자산을 말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치매 환자의 재산이 적절히 관리·사용되지 못하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임

2)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치매센터(2024), 2023년 치매역학조사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5. 5. 6.), "치매머니 154조 원, 2050년엔 488조 원 넘는다"

- 치매 환자는 재산관리,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 일상적인 법률행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금융사기와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재산관리 문제는 치료 지속, 의료 및 요양시설의 선택, 주거 환경과 같은 환자 본인의 신변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와 신변관리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의료, 요양, 주거 등에서 치매 환자의 보호가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치매 환자가 적기에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인의 재산 상황에 맞게 돌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와 신변관리를 위한 공적 제도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공공신탁이 시범시행 예정이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임

- 우리나라 후견제도는 지원보다 감독에 초점을 둔 사법부가 관리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⁴⁾
 - 후견 신청에서 선임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절차가 불편하며, 일상적인 비용 집행에서도 법원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 등, 법원의 기능이 지원보다는 감독에 치중되어 있음
 - 2014~2024년 가정법원에서 인용된 성년후견 건수는 62,148건(접수 84,825건)이며, 이 중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사전에 지정하는 임의후견 인용 건수는 119건(접수 269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이 저조함⁵⁾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공공신탁)는 올해 시범시행 예정이지만,⁶⁾ 아직 초기 단계로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표 2〉 유형별 성년후견 사건(미성년후견 제외)의 접수 및 인용 건수(2014~2024년)

(단위: 건)

구분	합계	성년	한정	특정	임의
접수	84,825	69,567	7,657	7,332	269
인용	62,148	49,649	6,012	6,368	119

주: 성년후견제도의 유형은 후견인 역할의 범위 및 기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됨
 자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25),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 치매신탁이 활성화될 경우 치매 환자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신탁상품은 재산과 신변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음

- 치매신탁은 위탁자의 치매 진단 시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판단력 저하로 인한 재산권 동결을 방지하고 경제적 착취 예방, 안정적인 치료비 및 생활비 조달을 목적으로 함

4) 제철웅(2025), “후견제도 개선사항: 지속적 대리권 등록 및 공공신탁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발표자료

5)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25),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6) 보건복지부(2026),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학대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신탁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치매 진단 시 돌봄 비용이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신탁 계약 시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조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재산과 신변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신탁은 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재산의 관리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변관리와 이를 위한 비용 조달도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중요하므로, 치매신탁을 통해 요양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보험회사만이 신탁업 영위와 요양서비스 제공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강조됨
 - 일부 보험회사(생보 5개사, 손보 2개사)와 보험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계열의 은행들은 신탁업을 영위 중임
 - 금융회사 중에서는 보험회사만이 요양서비스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업무로 수행할 수 있음

○ 그러나 관련 규제로 인해 치매신탁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본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노인요양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치매신탁은 치매 진단 이후에 효용이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설득과 판매 노력이 수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적극적인 가입 권유가 필요하지만,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고객의 접근성이 낮은 편임
 - 치매발생 이전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을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며, 치매 발생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재산의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치매신탁은 투자보다는 관련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임
 - 따라서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보다는 '관리형신탁'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령은 신탁재산에 '현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신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함⁷⁾
 -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데, 이는 치매신탁의 대중화에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으며,⁸⁾ 이로 인해 대부분의 치매신탁은 은행 창구에서 고객자산가를 대상으로 가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저축성보험(개인연금 등)의 보험금과 다양한 보장성보험(치매보험 등)의 보험금은 치매 진단 시 요양 비용 조달의 중요한 원천이 되지만, 관련 법령은 일반사망보험금의 보험금청구권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다양한 보험금청구권이 신탁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치매신탁 가입 단계에서 보험금 활용 등 요양 비용 조달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은 토지·건물의 임대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금지하고 있어, 시설 공급이 치매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노인복지법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을 관리형신탁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에 '현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치매신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8)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현재 등록되어 활동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은 10만여 명에 불과함

- 따라서 치매신탁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신탁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범위 확대, 임대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공급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체계적인 치매 인구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임
 -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주요 목적인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관리형신탁으로 분류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니더라도 소정의 교육을 통해 금융기관이 활용 가능한 인원(예: 보험설계사 등)에게 치매신탁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일반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범위를 생존보험이나 치매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토지·건물의 임대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허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요양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치매 인구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고령화가 우리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시설 임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한 바 있음